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9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31일

나. 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9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8. 9. 1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겁고 유익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(안 제3조~제4조)
- 행위의 제한사항(안 제5조)

- 안전감시망 구축(안 제6조)
- 안전관리 의무이행,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(안 제7조~제8조)
-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(안 제9조~제10조)
- 표창 등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인제)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주요 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~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
  - 안 제3조~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금지 행위에 대하여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
  - 안 제7조~제8조에서는 월1회 이상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 무이행 사항과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9조~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가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둬.
- 본 조례안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

- 우리구는 2018년 8월 현재 399개의 놀이시설이 있으며 제출된 조례안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박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8 월 일

발 의 자 : 박미영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관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행위의 제한사항(안 제5조)
- 라. 안전감시망 구축(안 제6조)
- 마. 안전관리 의무이행,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(안 제7조~제8조)
- 바.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(안 제9조~제10조)
- 사. 표창 등(안 제11조)

### **3. 제정안 : “별첨”**

### **4. 참고사항**

가. 관련근거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8. 8. 24. ~ 8. 30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.
4. “안전점검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5. “유지·관리”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

있도록 정비·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관리계획 수립)**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2.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놀이기구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
4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
5.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(놀이기구 안전상태,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)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

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예산 확보)**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기구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행위의 제한)**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흡연·음주·가무·방뇨 행위
2.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,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
3.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
4.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(수목, 안전표지판 등)을 훼손하는 행위
5.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
6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
**제6조(안전감시망 구축)**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·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·활용할 수 있다.

**제7조(안전관리 의무이행)**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

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

**제8조(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)**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

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**제9조(업무의 분담)**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.

②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.

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 : 공원 관리 부서

2. 「환경보건법」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: 환경 관리 부서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: 주택단지 관리 부서

4.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보육시설 관리 부서

5.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서

6.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대규모점포 관리 부서

7.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서

8.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목욕장업소 관리 부서

9.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: 놀이제공영업소 관리 부서

④ 제3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.

**제10조(관리 감독)** 제9조에 따른 소관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표창 등)**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(제7조제2항 관련)

구 분	점검항목
부대시설	○ 울타리, 의자,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
	○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
	○ 식수대,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
	○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
놀이터 공통사항	○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, 휘어짐
	○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
	○ 놀이터내 전기, 고압선, 유독물질,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
	○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
	○ 놀이터의 배수,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
	○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
	○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
	○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
그네	○ 그네고리( 'S' 혹)의 풀림 및 파손
	○ 그네 좌석판의 파손
	○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
	○ 그네 줄의 꼬임
	○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
	○ 그네 줄의 균형 상태
	○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,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
	○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
	○ 금속재질의 녹 발생
	○ 금이 간 곳의 존재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
	○ 볼트나 나사의 풀림
미끄럼틀	○ 미끄럼틀 보호벽(난간)의 파손
	○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
	○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

구 분	점검항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</li> <li>○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</li> <li>○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</li> <li>○ 금이 간 곳의 존재</li> <li>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</li> <li>○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</li> <li>○ 볼트나 나사의 풀림</li> </ul>
흔들놀이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</li> <li>○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</li> <li>○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</li> <li>○ 시소가 좌·우로 흔들림</li> <li>○ 손잡이가 흔들림</li> <li>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</li> <li>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</li> <li>○ 기구의 금이 간 곳</li> <li>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</li> <li>○ 돌출부나 거칠음</li> <li>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</li> </ul>
회전놀이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전상태(베어링 상태)</li> <li>○ 손잡이의 파손</li> <li>○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</li> <li>○ 회전축의 파손, 기울어짐, 흔들림</li> <li>○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</li> <li>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</li> <li>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</li> <li>○ 금이 간 곳의 존재</li> <li>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</li> <li>○ 돌출부나 거칠음</li> <li>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</li> </ul>

구 분	점검항목
정글짐 · 건너는 기구	○ 파이프가 휘어짐
	○ 금속부분의 녹슴
	○ 금이 간 곳의 존재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	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오르는 기구	○ 그물망(체인, 타이어)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
	○ 손잡이(파이프, 체인, 타이어)의 파손(갈라짐, 휘어짐, 영킴, 벗겨짐)
	○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
	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
	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
	○ 금이 간 곳의 존재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	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건너는 기구 · 공중놀이기구	○ 손잡이 파이프(혹은 링)가 파손(갈라짐, 휘어짐)
	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낄 수 있는 틈새
	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
	○ 금이 간 곳의 존재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	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물이용놀이기구	○ 급·배수 상태(물공급 노즐, 오버플로우, 배수구 등)
	○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(베어링, 이중안전장치 등)
	○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(테잎, 매트 등)
	○ 수질오염 상태(부유물질 등)
	○ 기초부,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

\*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